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
"국민을 위한 바른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2/전송(02)796-4487
정책국 정책국장 최윤배(6530) **정책팀장** 팀장 박우민(6532) 팀원 이은혜(6542) E-mail : luvu000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26-1416호

시행일자 2016. 12. 1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 개정·공포 알림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-9921(2016.12.9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이 2016.12.2.(금)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·개정되었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 온 바,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 임 : 1. 식약처 공문 1부
2. 의료기기법 개정내용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)